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성공회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 학칙」, 「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」 및 「수업관리 규정」에 따른 학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본 대학교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하는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 중 특별(교육) 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에 적용하며, 특별(교육)과정은 별도의 세칙을 둘 수 있다.
- 제3조(인재상과 핵심역량) ① 본 대학교는 '인권·평화·생태·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대 안을 모색하고 연대·실천할 수 있는 시민'을 인재상으로 한다.
 - ② 본 대학교의 3대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.
 - 1. 가치역량: 인간·인권, 민주시민, 생명·평화의 가치를 익히며,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인간, 사회, 세계를 성찰하는 능력
 - 2. 대안역량: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통찰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창출하는 능력
 - 3. 실천역량: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
- 제4조(교육과정의 구분과 정의) ①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활동을 말하며 교양교육과정과 전공교육과 정으로 구분한다.
- ② 교양교육과정은 교양교과과정과 교양비교과과정으로 구분한다.
- ③ 전공교육과정은 전공교과과정과 전공비교과과정으로 구분한다.
- ④ 교과과정은 학점을 부여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하며 교양교과과정과 전공교과과정으로 구분한다.
- ⑤ 비교과과정은 교과과정 이외에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하며 교양·전 공비교과과정 및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비교과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한다.
- ⑥ 편성교과목이란 교양·전공교과과정에 등재된 교과목을 말하며, 개설교과목이란 편성교과 목 가운데 학년 학기별로 개설되는 교과목을 말한다.

제2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구

- **제5조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구)**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기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09.20.>
 - 1. 교양교육과정위원회
 - 2. 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

- 3.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
- 4. 비교과통합관리센터운영위원회
- 5. 교육과정위원회
- 6. 교육위원회
- 제6조(교양교육과정위원회) 본 대학교의 「열림교양대학 운영 규정」의 제5조를 따른다.
- 제7조(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) 본 대학교의 「나눔융합전공대학 운영 규정」의 제3조의 2를 따른다.
- **제8조(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)** 본 대학교의 「나눔융합전공대학 운영 규정」의 제3조의 1을 따른다.
- 제9조(비교과통합관리센터운영위원회) 본 대학교의 「더불어숲교육혁신원 규정」의 제5조의2를 따른다. <개정 2023.09.20.>
- 제10조(교육과정위원회) 본 대학교의 「교육과정위원회 규정」을 따른다.
- 제11조(교육위원회) 본 대학교의 「교육위원회 규정」을 따른다.

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

- 제12조(교육과정 편성 기본원칙) ① 교육과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, 교육목표, 인재상,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편성 및 운영한다.
- ②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넘어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이 가진 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에 필요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한다.
- ③ 산업계 및 사회 요구와 학문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.
- ④ 융복합·복수(부) 전공교육과정을 다양화한다.
- **제13조(개편 주기)** 교육과정 개편은 수시개편과 정기개편으로 구분하며, 정기개편은 4년 주 기로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4조(교양교육과정 편성) ① 교양교육과정은 본 대학교의 인재상, 교육목표,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열림교양대학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고 및 외부사업 지원에 따른 교양 교과목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서 편성할 수 있다.
 - ② 교양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.
 - 1. 교양교육과정 정책 수립
 - 2. 교양교육과정 관련 산업계 및 사회 요구 조사

- 3. 교양교육과정 편성안 수립 및 검토
- 4.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심의
- 5.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(사안에 따라 교육위원회, 기획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함) <개정 2023.06.21.>
- 6.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- 7. 교양교육과정 교육만족도 조사
- 8. 교양교육과정 자체평가
- 제15조(전공교육과정 편성) ① 전공교육과정은 본 세칙 제16조에 따라 각 전공이 설정한 전 공능력을 반영하여 각 전공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고 및 외부사업 지원에 따른 전공 교과목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서 편성할 수 있다.
 - ② 전공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.
 - 1. 전공교육과정 정책 수립
 - 2. 전공교육과정 관련 산업계 및 사회 요구 조사
 - 3. 전공교육과정 편성안 수립 및 검토
 - 4. 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 심의
 - 5.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(사안에 따라 교육위원회, 기획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함) 〈개정 2023.06.21.〉
 - 6. 전공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 - 7. 전공교육과정 교육만족도 조사
 - 8. 전공교육과정 자체평가
 - ③ 각 전공은 타 전공과 융합 교과목을 신규 개발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,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확정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23.06.21.>
- 제16조(전공능력) ① 전공능력이라 함은 각 전공분야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직무, 과업,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, 기술,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·종합적 능력을 의미한다.
 - ② 전공능력은 다음의 각 호의 순서로 설정한다.
 - 1. 전공 외부 환경 분석
 - 2. 전공 내부 환경 및 요구 분석
 - 3. 전공능력 설정 및 개념 정의
 - 4. 전공능력 설정 타당도 자체평가
 - 5. 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 심의
 - 6.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
 - ③ 전공능력은 다음의 각 호의 순서로 전공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한다.
 - 1. 전공 교과목과 전공능력 맵핑
 - 2. 전공교육과정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
 - 3.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체계 작성
 - 4. 전공교육과정 진로 로드맵 작성
 - 5. 전공능력 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
 - 6. 전공교육과정소위원회 심의

7,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

- **제17조(비교과과정 편성)** ① 본 대학교의 비교과과정 편성은 더불어숲교육혁신원의 비교과통 합관리센터가 총괄 관리한다.
 - ② 열림교양대학의 교양비교과과정은 학기별 교양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운영한다.
 - ③ 전공별 전공비교과과정은 학기별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운영한다.
 - ④ 전공별 비교과과정 및 교양·비교과과정을 제외한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학년도별로 비교과통합관리센터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운영한다. 〈개정 2023.09.20.〉
- 제18조(교육과정 개선) ①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질 개선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, CQI)을 위한 보고서는 매 학기 작성 및 활용한다.
 - ② 교과목 질 개선을 위한 교과목 CQI 보고서 작성은 강의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른다.
 - ③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질 개선을 위한 CQI 보고서 작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.
 - 1. 교무처는 매 학년도 CQI 보고서 작성 계획을 수립하여 열림교양대학과 나눔융합전공대학에 CQI 보고서 작성을 요청한다. 필요에 따라 교육혁신IR센터는 CQI 보고서 작성 양식 구성에 협조할 수 있다.
 - 2. 교과목 질 개선을 위한 교과목 CQI 보고서 작성은 강의평가에관한시행세칙 제6 조제3항에 따른다.
 - 3. 교육과정 질 개선을 위해 열림교양대학 및 나눔융합전공대학은 매 학기 종료 후 교양 교육과정 CQI 보고서 및 전공 교육과정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양교육과정 위원회, 전공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교무처에 제출한다.
 - 4. 교무처는 열림교양대학 및 나눔융합전공대학으로부터 수합한 교양 교육과정 CQI 보고서 및 전공 교육과정 CQI 보고서를 검수하고 종합한다. 단, 매 학년도 마지막 학기(2학기)는 교육혁신IR센터의 협조를 거쳐 종합 분석 내용을 담은 대학 교육과정 CQI 보고서를 완성한다.
 - 5. 매 학년도 1학기 교양 교육과정 CQI 보고서 및 전공 교육과정 CQI 보고서는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, 2학기 교양 교육과정 CQI 보고서, 전공 교육과정 CQI 보고서, 대학 교육과정 CQI 보고서는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.
 - ④ 교무처는 확정된 대학 교육과정 CQI 보고서를 열림교양대학과 나눔융합전공대학에 배포하며,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.

[전문개정 2024.04.24.]

제4장 교과목 개설, 분반, 폐강

- 제19조(교과목 특성) 교과목 특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이론 과목: 이론 위주로 운영되는 과목
 - 2. 이론 실습 병행 과목: 이론 및 실험·실습·실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과목
 - 3. 실험 · 실습 · 실기 과목: 실험 · 실습 · 실기로 운영하는 과목
 - 4. 이론 및 실험·실습·실기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「수업관리 규정」 제19조에 따른다.
- 제20조(교과목 개설) ① 교양교과목은 열림교양대학이 교양교과과정 편성에 따라 교양필수와 교양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기별로 개설하며, 교양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「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다.
 - ② 전공교과목은 나눔융합전공대학이 전공교과과정 편성에 따라 전공탐색, 전공필수, 전공 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기별로 개설하며, 전공 교과목에 관한 사항은 「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칙」 제7조 내지 제7조의 2와 제8조에 따른다.
 - ③ 개설교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성공회대학교 학칙」 제28조에 따른다.
- 제21조(교과목 개설 제한) ① 교무처는 학년도별 전공별 시수총량을 정하여 각 전공에 통보하며, 전공별로 정해진 시수총량에 따라 교과목을 개설한다.
 - ② 전공필수 교과목은 매년 개설하여야 하며, 1학기와 2학기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개설한다.
 - ③ 교양교과목은 매학기 동일과목을 반복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, 단, 수요가 적거나 매학기 담당교원 초빙이 어려운 교과목은 격학기, 격년 또는 기타의 주기로 개설할 수 있다.
- 제22조(교과목 분반) 교과목 분반에 대한 사항은 「수업관리 규정」 제7조에 따른다.
- 제23조(개설교과목의 폐강) 개설교과목의 폐강 기준은 「수업관리 규정」 제11조에 따른다.

제5장 수업운영

- 제24조(수업운영) 수업운영은 분할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.
 - 1. 분할수업은 75분 단위로 하며, 월/수요일 또는 화/목요일 오후 12시 이후로 편성한다.
 - 2. 연속강의가 필요한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과 금요일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3. 학기당 한 과목만 강의를 담당하는 외래교수의 경우 연속강의로 할 수 있다.
- 제25조(수업기간과 강의시간) 수업기간과 강의시간에 대한 사항은 「수업관리 규정」 제9조에 따른다.
- 제26조(수업장소) ① 수업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시설 또는 장비의 제한으로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수업
- 2. 응용력 및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수업
- ③ 교무처장은 제2항의 수업에 대해 운영방식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.
- 제27조(현장실습교과목) 현장실습교과목에 대한 사항은 성공회대학교 학칙 제28조제3항에 따른다.

제6장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

- 제28조(교육과정 이수기준)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기본 요건은 「교육과정에 관한 시행세 칙」 제4조 내지 제7조의 2에 따른다.
- 제29조(전공유형별 최소이수학점) 전공유형별 최소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. 단, 각 전공은 최소이수학점 범위 안에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학점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전공탐색 교과목 이수학점은 전공유형별 최소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전공구분	주전공	복수전공	부전공	혁신융합전공	자기주도설계전공
최소이수학점	42	30	21	21	21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